

## 공유재산(토지) 대부 재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일반재산-토지)에 대하여 대부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 1. 15.

대 강 중 학 교 장

###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가. 수의계약건명: 공유재산(토지) 대부 수의계약

나. 대부재산

순	재산의 표시			소유자	대부 면적 (㎡)	대부 목적	대부료 예정가격 <i>*최저금액</i>	대부기간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1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방동리 467-1	전	862	전라북도 교육감	862	경작	82,830원	2025.3.1.~2027.2.28. (2년)

※ 예정가격 산출근거 : 대부면적 × 공시지가(㎡당) × 요율(경작1%) × 사용일수

-공시지가 : 9,610원 (대강면 방동리 467-1)

※ 다음 연도 이후의 연간 대부료는 매년 공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매 다음 연도 시작 1개월 전에 피대부자에게 공지합니다.

### 2. 지원 기간 및 방법

가. 지원 기간: 2025.1.17.(금) ~ 2025.1.23.(목)

나. 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 기간 내에 대강중학교 행정실에 방문하여 **공유재산 대부 수의계약 지원서(붙임2)**를 제출

다. 지원자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도장,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현주소 확인용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3. 지원자격

공고일 현재 대강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실제 경작이 가능한 자

### 4. 수의계약자의 결정방법

가. 2025.2.3.(시간 추후 공지) 지원자 전원 입회 하에 개봉

※ 불참 시 대부 의사 없음으로 간주함.

나. 지원 기간 내 지원서에 의하여 최고가를 제시한 자와 수의계약

다. 최고가제시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음 순위자들과 차례로 계약을 체결함

### 5. 대부계약의 체결 및 대부료

가. 결정된 수의계약자는 대강중학교 행정실에 방문하여 대부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일: 2025년 2월 중

○ 계약장소: 대강중학교 행정실(본교 1층)

○ 계약체결 시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도장, 주민등록 초본(또는 등본)

※ 주민등록 초본(또는 등본)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함.

나. 수의계약자는 계약과 동시에 별도 고지서에 정해진 연간 대부료를 일시에 완납하여야 하며, 대부료 미납부 시 대부계약 해지 사유로써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 6. 유의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라북도교육 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대부계약 조건에 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나. 본 수의계약은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현 상태대로 대부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대부재산의 현장답사, 각종 공부의 확인, 법률·행정상 규제와 공유재산 대부의 일반원칙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합니다.

단, 향후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측량 결과 사용 중인 재산 면적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감면적에 대하여 정산 또는 면적변경 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대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부재산의 위치, 모양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활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당해 재산의 토지활용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 나 항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수의계약자가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반사항의 미비로 인하여 허가받은 재산의 활용에 제한을 받거나 기타 법률상 불이익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마. 대부재산의 지상(地上)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으며 사전 동의 없이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 바. 대부재산은 농경지로서 농작물만 경작할 수 있고, 해당 목적 내의 사용권을 제외한 일체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재산의 일부 또는 전체를 3자에게 전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위반 사유로 대부계약을 해지합니다.
- 사. 계약 후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목적 등으로의 사용을 불허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아. 대부계약기간 중이라도 당해 재산이 매각되어 재산의 소유가 바뀐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당해 공유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계약은 당연 해지하고, 대부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납부한 대부료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 7.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기타 대부 재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강중학교 행정실 재산담당자(063-625-0352)에게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가. 대강면 방동리 467-1

### ○ 위치도



### ○ 현장 사진

